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리더 메시지



신창환 전무

Tax Partner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Pillar Two)는 디지털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자 OECD를 중심으로 마련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상 기업들은 필라2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액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해 필라2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기능별/단계별로 수립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배경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와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중.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

디지털 경제의 특징

- ✓ 사업장 없이 수익 실현 가능
- ✓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두

- ✓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조세회피 문제 대두

Pillar 제도의 도입

- ✓ OECD/G20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Inclusive Framework(IF)를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필라 제도 도입

Pillar Two

- ✓ 필라1(Pillar One)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또는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이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의무



의무대상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현재 OECD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영문) 공개
(한국 법인세 신고서식과 유사)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의무



의무대상

소득 산입 규칙·소득 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한 추가세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구조

추가세액의 계산

- ✓ **적용대상** :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회사의 연결 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
* 단일 국가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그룹은 미적용
- ✓ **최저한세율** : 15% (국가별 적용)
- ✓ **국가별 추가세액** : (회계상 순손익 ± 조정 - 실질기반제외소득*) X (15% - 실효세율)
* 종업원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
→ **실효세율**: (회계상 법인세비용 ± 조정) ÷ (회계상 순손익 ± 조정)
- ✓ **기업별 추가세액**: '회계상 순손익 ± 조정' 금액의 비율로 배분

추가세액의 과세

글로벌 최저한세는 3가지 과세규칙에 따라 과세

- ✓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자회사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
-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 IIR로 과세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각 국가에서 과세
* 모회사가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지국이 IIR 미도입
- ✓ **소재국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추가세액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 추가세액을 QDMTT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과세권이 IIR/UTPR 시행국가로 이전되지 않음
** IIR은 '24년 시행, UTPR은 '25년 시행 예정이며, QDMTT는 시행 시점 미정

출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과 대응 준비 사항



Bob Stack

Deloitte US |
International Tax Group

딜로이트가 수행한 2023 다국적 기업 글로벌 세무 서베이 (Global Tax Survey)에 따르면, 필라2가 조직의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모델링을 수행했다는 기업은 44%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필라2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처럼 거대한 조직에게 있어 필라2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Chad Hungerford

Deloitte US |
US Pillar Two

필라2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과 영향을 정량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단순히 몇 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최소 수개월~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필라2의 복잡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첫 회계연도인 2024년 신고서 제출기한은 해당연도 종료 후 18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2026년 중반은 멀지 않다. 기업들은 즉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재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lison Lobb

Deloitte UK |
International tax policy

딜로이트 2023 글로벌 세무 조사 (Deloitte's Global Tax Survey)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다국적 기업의 68%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세무 및 회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는 반면, 약 3분의 1(32%)의 기업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조직 내 사업 부서와 여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 부서는 자세한 시산표(trial balance) 계정, 소유권 관련 데이터, 거래 분석, 산업별 정보 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Christopher Roberge

Deloitte Global |
Tax & Legal

일부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필라2로 인한 영향으로 수익에 타격을 입거나 기업 가치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담당자와 협력하여 필라2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우리 비즈니스에 필라2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Rachel Hossack

Deloitte UK |
Corporate reorganizations

다국적 기업의 회계/재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간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인은 프랑스의 정보를 알고, 스페인 법인은 스페인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본사는 해외 법인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기술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회계/재무 데이터가 회사 전체 부서에서 원활하고 쉽게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선제적 대응 필요



- 01 필라2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02 추가 세액 정량화 및 예측 모델 구축
- 03 본사와 해외지사의 회계/재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통합
- 04 대외 관계자(애널리스트 등)의 질문 및 요구사항 대응 준비
- 05 회계부서의 정보 제공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딜로이트 세무자문 전문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세무자문 본부는 업종과 업무 유형에 특화된 전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세무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 기여합니다.

Contact Point



신창환 전무

Tax Partner | Business Tax

Tel: 02 6676 4583

Email: chanshin@deloitte.com



스캇 올슨 전무

Tax Partner | Tax-M&A

Tel: 02 6676 2012

Email: scoleson@deloitte.com



김선중 파트너

Tax Partner | Business Tax

Tel: 02 6676 2518

Email: sunjoongkim@deloitte.com



민지선 이사

Tax Director | Business Tax

Tel: 02 6676 2811

Email: jimin@deloitte.com



김희진 이사

Tax Director | Business Tax

Tel: 02 6099 4625

Email: heejinkim2@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본부 리더
손재호 **Partner**
jaehosoh@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양원석 **Senior Consultant**
wonsukyang@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